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(안 제14조의2)

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○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및 가산일수 확대(안 제13조 및 별표 4)

○ 경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(안 별표 5)

-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특별휴가 부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이 일부개정(시행. 2023.10.19.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3조에서 경력직·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연가가산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을 현행의 “2년 미만”에서 “5년 미만”으로, 연가가산 일수는 현행의 “2일”에서 “3일”로 각각 확대하였으며, 이를 반영하여 안 [별표 4]의 연가가산 일수 또한 변경함. 이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이 경력직·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대상 재직기간 및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(시행. 2023.7.18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.
- 안 제14조의2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한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 이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(시행. 2023.6.13.)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에 근거한 것임.
- 한편, 현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“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현행 별표 5에서는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“10일”로 정해져 있으나, 안 [별표 5]는 “10일”을 원칙으로 하되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확대함. 이는 개정(시행. 2023.10.19.)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의[별표 1]에 근거한 것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(안 제14조의2)

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나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및 가산일수 확대(안 제13조 및 별표 4)

다. 경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(안 별표 5)

-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특별휴가 부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10. 5.~10. 25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2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) 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3조 관련)

1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<u>2년</u>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4조의2(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) 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